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Social Complaint Type of Non-specific Motive Crime

이 영 섭* · 박 지 선**

차 례

- | | |
|-------------------|-------------|
| I. 서론 | IV. 시민권적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시민권적 분석의 필요성 | |

• 국 문 요 약 •

본 연구는 표출적 범죄의 유형 중 하나인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에 대한 형사적인 접근이 아닌 사회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묻지마 범죄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들의 분류체계에서 구분된 묻지마 범죄의 하위 유형중 하나인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를 특정하였다. 더불어 이를 해석하기 위한 틀로 T.H. Marshall의 시민권 이론을 활용하여 범죄자들이 가진 사회적 배경이 이들의 실질적인 시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이어서 범

죄자들에서 특징되는 실질적 시민권의 차이는 개인이 속한 사회적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기존의 범죄학적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 정체성과 범죄 사이를 강한 연관성을 추가로 특정함으로써 시민권적 위세의 차이와 범죄사이의 연결고리를 구성해보았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라는 범죄현상의 종류에 대한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적인 접근의 중요성과 '사회적 정체성'과 같은 새로운 변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 주제어 : 시민권, 표출적 범죄, 묻지마 범죄, 사회적 정체성, 사회불만

* 경찰청 외사국, 사회학 석사, 제1저자.

**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교신저자.

I. 서론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흔히 ‘묻지마 범죄’라 불리우는 범죄의 유형의 하위 유형으로서의 현실불만형 범죄와 관련하여 T.H. Marshall의 시민권 이론 등을 도입하여 범죄의 형태가 아닌 현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먼저, 2000년 후반 이후로 급증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연구는 크게 세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언론에 의해서 먼저 유통되기 시작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의와 함께 이전의 국내의 유사 범죄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2000년대의 연구들¹⁾이었다. 이러한 첫 번째 단계의 연구들을 통해서 국내에서 지칭하는 ‘묻지마 범죄’라고 지칭되는 유형의 범죄들의 속성 및 분류에 대한 논의가 학문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두 번째 단계로 2012년 전후로 그 동안 축적된 사회적 관심 및 논의들을 기반으로 정부기관에서 발주하고 통계자료를 제공한 정책적 연구들²⁾이 진행되

- 1) 박순진,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3 ; 김상균, “무동기 흉악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21호, 한국경찰학회, 2009, 5-31쪽 ; 김진혁, “한국형 증오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6권 제1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10 ; 고선영, “이상동기범죄자의 성향 및 특성 프로파일링- 불특정 대상 무차별 상해사건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11권 제4호, 한국경찰학회, 2012 ; 박형민, “무차별 범죄 (Random Crime)의 개념과 특징”,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 2013, 226-258쪽.
- 2) 박지선·최낙범, “묻지마 범죄의 특성과 유형”,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4(3), 2013, 107-124쪽 ; 윤정숙·박지선·안성훈·김민정,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3, 1-179쪽 ; 대검찰청, 묻지마 범죄자 심층면접을 통한 실증적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013.

었다.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포괄한 이 두 번째 단계의 연구들은 이전에서 개별 연구자별로 언론에 노출된 사례수집에 근거한 연구들에서 진일보하여, 통계분석 및 심리학적 분석을 함께 적용하여 묻지마 범죄의 유형화를 이끌어내었다. 이를 통해서 그 동안 명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었던 묻지마 범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특정한 접근방식을 가지고 분류 가능한 범죄로 실체화시켰다. 이후, 이렇게 실체화된 묻지마 범죄들에 대해서 세 번째 단계의 연구들³⁾은 이러한 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해석하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위의 세 단계에 걸쳐서 진행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세 번째 연구단계로의 일환으로,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의 한계에서 벗어나 두 번째 단계에서 도출된 결론들을 참고하여 T.H. Marshall의 시민권 이론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시도해보았다. 특히, 그 동안 우리가 ‘묻지마 범죄’라고 불렀던 범죄의 하위 유형으로서의 현실불만형 범죄들을 중심으로, 이런 유형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가지는 함의와 앞으로의 접근방법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묻지마 범죄의 등장

인터넷 검색 사이트 ‘네이버’를 통한 과거 뉴스 검색(뉴스 라이브러

3) 유주영 · 박영숙, “묻지마 범죄’를 둘러싼 담론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44호, 2016, 53-80쪽 ; 천정환, “한국형 묻지마 범죄 담론에 대한 독창적 비판론”, 교정복지연구, 43호, 2016, 175-214쪽.

리)을 이용한 결과, ‘묻지마’라는 단어가 주요 언론에 처음으로 사용된 시기는 1996년이였다. 당시에는 묻지마 범죄가 아닌 ‘묻지마 만남’이라는 용어로 등장하였는데,⁴⁾ 이 ‘묻지마 만남’은 당시의 기준으로 불건전하고 퇴폐적인 새로운 유형의 만남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었고, 이를 사회병리 현상의 일종으로 보는 우려적 시각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후 ‘묻지마 대선’⁵⁾ ‘묻지마 투자’⁶⁾ 등으로 불린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는 사건 자체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나 명확하거나 타당한 동기 없이 행해지는 행동을 지칭하는 부정적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후 1999년 들어서는 ‘묻지마’를 키워드로 하는 기사들이 백단위를 넘어섰고, 그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주식 투자관련 내용들의 경우 묻지마 주식투자 행태를 넘어서 이러한 투자와 관련된 증권범죄를 매개한 사이트(묻지마닷컴, www.donotask.com)를 함께 소개하며 범죄관련성을 경고한 기사⁷⁾가 등장하는 등, 2000년대부터 그간 부정적인 현상이나 퇴폐적인 현상에만 머물러있던 ‘묻지마’라는 키워드가 본격적으로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그 후로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폭행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들 중 특정한 종류의 범죄를 통칭하는 용어로 ‘묻지마 범죄’가 널리 통용되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사회에 등장한 묻지마 범죄에 대하여 첫 번째 단계의 연구를 진행한 학자들은 ‘묻지마 범죄’가 과연 무엇이기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였다. 이때 논의된 내용으로는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특정적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수가 여러 명인 범죄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⁸⁾, 범행을 저지를 동기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범죄 중 불특정 다

4) 강석운·박종생, “‘묻지마’ 사회심락을 켜다” 한겨레, 1996. 10. 30.

5) 김종구, “침울한 청와대 ‘묻지마 대선’”, 한겨레, 1997. 09. 24.

6) 서화동, “이준마부대 가세 ‘묻지마 투자’”, 경향신문, 1998. 12. 11.

7) 손성태, “형사정책연구연, 증권범죄사례 인터넷에공개키로”, 한국경제, 2000. 12. 13.

수를 향한 범죄인 ‘무동기 범죄’,⁹⁾ 기존의 증오범죄의 개념에서 변형된 한국형 증오범죄인 ‘증오범죄’,¹⁰⁾ 심리학의 용어인 이상심리를 가지고 정의한 ‘이상동기범죄’,¹¹⁾ Best¹²⁾의 random crime 이라는 개념을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여 분석한 ‘무차별 범죄’¹³⁾ 등으로, 연구자들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묻지마 범죄를 정의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정의에 대한 학계의 견해는 통일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유형을 포괄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통일된 정의의 도출보다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의된 묻지마 범죄의 추가적인 실체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2. 묻지마 범죄의 분류

이 두 번째 단계의 연구들은 주로 2012년 이후 이러한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관심과 지원 속에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선행연구들은 ‘묻지마 범죄’를 유형화하여 그 각 유형들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구조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박지선·최낙범¹⁴⁾은 묻지마 범죄를 ‘정신장애형’과 ‘현실불만형’으로 나누었으며, 윤정숙 외¹⁵⁾

8) 박순진, 앞의 논문.

9) 김상균, 앞의 논문.

10) 김진혁, 앞의 논문.

11) 고선영, 앞의 논문.

12) Best, Joel, *Random violence: How we talk about new crimes and new victims*: Univ of California Press, 1999.

13) 박형민, 앞의 논문.

14) 박지선·최낙범, 앞의 논문.

15) 윤정숙·박지선·안성훈·김민정, 앞의 책.

의 연구 역시 ‘불만 및 분노형’과 ‘정신 장애형’으로 분류하였고, 대검찰청과 경기대학교가 진행한 정책연구용역¹⁶⁾에서 역시 문지마 범죄를 ‘정신장애 집단’, ‘외톨이 집단’, ‘반사회적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된 문지마 범죄의 유형들에 대하여 정신장애유형의 경우에는 치료와 교정적 관점에서의 관리방안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현실 불만 및 분노에 기반을 둔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갈등 및 상담서비스, 나아가 보다 거시적인 사회적 접근방법이 그 대안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문지마 범죄의 분류 및 대처방안

선행연구	구분	분류	대처방안
박지선 · 최낙범 (2013)	현실불만형	본인의 어려운 처지에 따른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과 분노의 누적	- 갈등해결프로그램 - 상담서비스 - 인지행동치료
	정신장애형	망상과 우울증 등 정신 질환	
윤정숙 외 (2013)	현실불만형	사회불만 및 처지 비관	- 대인관계 개선
	만성분노형	타인의 행동 및 의도에 대한 오해, 분풀이, 단순한 재미, 상습성	- 관리체계 정비 - 고위험군 수형자 관리
	정신장애형	조현병 등 정신장애 및 마약류 등 환각 물질의 흡입	- 치료보호시설 확보 - 외래진료적 접근 - 퇴소자 사후관리체계
대검찰청 (2013)	정신장애	정신지체 및 정신분열 등	- 사후 치료시설
	외톨이	가족관계	- 대인관계 개선
	반사회적	PCL-R 등의 반사회성 지표	- 출소 이후 위험관리

16) 대검찰청, 앞의 책.

명확히 정의되거나 특정되지 아니하였던 묻지마 범죄들에 대하여 위 선행연구들은 그 유형화를 시도하였고, 공통적으로 정신장애에 기반한 묻지마 범죄와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담은 묻지마 범죄를 그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여 보여주었다.

이러한 두 번째 연구단계의 대표적 선행연구들이 위와 같은 유형별 대처방안을 포함한 분리적 접근을 결론으로 도출하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묻지마 범죄'에 대한 단일척도에 대한 논의의 한계에 대한 것이다. 윤정숙 외¹⁷⁾의 경우 "묻지마 범죄는 그 이질성으로 인해 어떠한 하나의 축을 가지고 설명하기 보다는 다양한 축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박지선 · 최낙범¹⁸⁾의 연구 역시 묻지마 범죄의 유형화를 통한 대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묻지마' 라는 용어의 부적절성을 언급하며 범죄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실효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대검찰청의 연구¹⁹⁾ 역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실증적인 연구의 결핍을 언급하며, 대검찰청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유형화를 시도하는 것에 연구의 방점을 두며 새로운 유형의 연구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3. 묻지마 범죄의 해석 및 이해

위와 같은 두 번째 단계의 선행연구들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묻지마 범죄의 논의에 대해서 소수의 후속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유주영 · 박영숙²⁰⁾(2016)의 연구는 묻지마 범죄 담론이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도

17) 윤정숙 외, 위의 책, 125쪽.

18) 박지선 · 최낙범, 위의 논문, 121쪽.

19) 대검찰청, 위의 책, 5쪽.

출해내고자 하였다. 즉, 이들의 연구는 언론과 대중, 그리고 사회기관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며, 강남역 살인사건에서 여성문제 관련 담론을 통한 사회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천정환²¹⁾ 역시 후속연구에서 묻지마 범죄를 계속 세분화해 나아가며 ‘묻지마 범죄’라는 형식 자체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세분화한 유형 내용에 따른 개별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개괄적인 행정적 관점에서의 대책만을 제시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이제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새롭게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 더 이상 ‘묻지마 범죄’ 라는 낙인을 씌우는 것을 지양하면서 두 번째 단계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하위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 범죄인지를 특정하고, 이 단계의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것과 같이 유형별 맞춤형 대안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세 번째 단계의 선행연구와 같이 범죄 자체에 대한 분석을 넘어, 범죄를 통해 드러나는 사회적 문제점과 그 접근방식에 대한 보다 거시적·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 관점에서의 연구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단계의 선행연구들에 의해서 특정된 묻지마 범죄의 하위 유형 중 하나인 표출적 성격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시민권에 기반한 사회적 정체성을 통한 논의를 발전시켜, 세 번째 단계와 같이 범죄 자체에 대한 분석을 넘어 현상에 대한 해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20) 유주영·박영숙, 앞의 논문.

21) 천정환, 앞의 논문.

Ⅲ. 시민권적 분석의 필요성

1. 묻지마 범죄의 하위 유형으로서의 표출적 범죄

두 번째 단계의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분류한 유형 중 하나는 본인의 분노와 불만을 사회를 향해서 표출하고자 하는 묻지마 범죄이다. 박형민²²⁾은 묻지마 범죄를 '무차별 범죄'로 개념화하며 묻지마 범죄를 표출적 범죄의 유형으로 특징지었으며, 치안정책연구소²³⁾ 역시 범죄 당시에 범행의 동기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추후 조사과정에서는 현실불만형 범죄로 분류되는 경우가 묻지마 범죄의 다수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를 연구하는 것은 묻지마 범죄의 본질에 접근 하기에 매우 유용한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불만 동기의 유형의 범죄는 표출적 범죄(expressive crimes)로 분류될 수 있는데, 표출적 범죄는 필요한 것들을 정당한 수단으로 얻기가 불가능할 경우 범죄적인 수단에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도구적 범죄(instrumental crimes)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긴장을 다른 대상에게 표출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분출 이외의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죄를 지칭한다.

이렇게 사회에 대한 불만을 범죄로 표출하는 유형의 경우 다른 범죄들에 비해 그 심각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매년 공개하는 범죄통계에 따르면, 살인의 기수 또는 미수에 이르는 범죄들 중 동

22) 박형민, 앞의 책, 226-258쪽.

23) 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보고서, 묻지마범죄의 개념화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3, 66쪽.

기가 현실불만으로 특정되는 것들의 발생비율 및 절대량이 2013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현실불만의 동기로 인하여 살인의 기수에 이른 사건들의 경우, <표 2>와 같이 2013년 10건이었던 것에 비하여 2015년에는 16건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살인 기수에 이른 사건들 중 현실불만에 기인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표 3>과 같이 2.9%에서 4.1%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2> 2013~2015년 살인범죄 중 현실불만동기에 의한 살인

구 분	2015 (건/비율)	2014(건/비율)	2013(건/비율)
살인 기수	16(4.1%)	16(3.5%)	10(2.9%)
살인 미수 등	40(6.8%)	38(6.6%)	36(5.8%)

이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점은 같은 유형의 범죄 중 현실불만의 동기로 발생한 범죄의 비율을 볼 때, 폭력범죄(상해, 폭행 등)에 비해서 강력범죄(살인 등)의 비중이 <표 3>과 같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3> 2013~2015년 강력 및 폭력범죄 중 현실불만동기에 의한 살인

구 분	2015 (비율)	2014 (비율)	2013 (비율)
살인 기수	4.1%	3.5%	2.9%
살인 미수	6.8%	6.6%	5.8%
상 해	1.3%	1.3%	1.5%
폭 행	0.7%	0.8%	0.6%

이러한 경향은 윤정숙 외²⁴⁾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음모의 비중이 분석대상 문지마 범죄 유형에서 각각 0%·50%·25%로, 정신장애유형의 11.1%·38.9%·0% 및 만성분노형의 0%·4.5%·0%에 비해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절대량의 증가와 더불어 현실불만 동기의 범죄의 경우 다른 동기에 의해서 발생한 범죄보다 강력범죄에 이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그 심각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인적 긴장과 사회로의 표출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성이 두드러지는 현실불만 동기 범죄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는데, 개인의 사회 및 현실에 대한 불만이 범죄로 표출되는 원인인 개인적 긴장의 사회적 표출을 설명한 것에는 구조적 긴장이론이 있다. 구조적 긴장이론의 뿌리는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의 아노미(anomie)개념에서 시작되는데, 이러한 아노미는 분업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원초적 사회에서 인구수와 사람들 간에 상호작용하게 되는 횡수가 증가하면서, 역동적 밀도(dynamic density)의 상승으로 유기적 연대의 사회(분업에 기반하고 차이에 의한 연대가 발생하는 사회)가 등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총체이다. 즉,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긴장이 만들어내는 위기로 인해 규칙과 규범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로버트 머튼(Robert K. Merton)의 아노미 이론에서 범죄학에 적용되었는데, 그의 저서 'Social Structure and Anomie'²⁵⁾에서 그는, 각

24) 윤정숙·박지선·안성훈·김민정, 앞의 책, 108쪽.

25) Robert K. Merton,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개인이 사회라는 구조 안에서 설정한 목표와 이를 이루기 위해 이용 가능한 제도적 수단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였다(〈표 4〉참조).

〈표 4〉 머튼의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관계 유형

	문화적 목표	제도화된 수단
1. 동 조	+	+
2. 혁 신	+	-
3. 의 례	-	+
4. 도 피	-	-
5. 반 항	±	±

그에 따르면 첫째, ‘동조’ 유형의 경우 현 사회제도를 지탱하는 양식의 행동유형으로, 이들이 없으면 사회의 연속성과 계속성은 담보될 수 없다. 둘째, ‘혁신’ 유형의 경우 부적절한 사회화에 기반하여 제도적 수단을 포기하지만 성공에 대한 열망은 유지는 유형이다. 셋째, ‘의례’ 유형은 극단적인 제도적 요구의 집합으로, 목표가 역량 너머에 존재하지만 관습이 지속되는 경우이며, 넷째, ‘도피’ 유형의 경우, 첫 번째 유형과 완전히 반대되는 유형으로 사회적인 목표나 문화적 지향을 상실하고 지내는 유형으로, 가장 흔하지 않은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반항’의 경우, 좌절이나 한계로 인해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도입하려하는 유형이다.

여기서 일반적인 범 죄는 둘째, ‘혁신’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목표(물질적 이득, 욕구 등)가 있지만 이를 위한 제도적인 수

Review, Vol 3, Issue 5, 1938, pp.672-682.

단이 없을 경우 이들은 절도나 강도 등 범죄라는 탈-제도적 수단을 통해서 이를 확보하고자 한다. 하지만 현실불만형 문지마 범죄의 경우 얻고자 하는 명확한 것이 없기에 이러한 유형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들은 Merton이 나눈 여러 유형에 증첩되어 있는데, 먼저 범죄를 실행하기 전 초기단계에서 '도피' 유형을 거치는데, 여기서 제도화된 수단을 이용할 능력을 상실하고 사회적으로 설정된 목표에 대해서 포기를 하게 된다. 그리고 넘어가는 단계가 '반항'단계이다. 즉, 기존의 사회구조에 대한 불만과 경멸이 도피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사회에 대한 불인정과 막연한 분노가 쌓이다가 일정한 역치를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억눌린 분노의 발산이 이들의 목표로 치환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대표적인 문지마 범죄의 사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즉 2012년의 여의도 칼부림 사건의 경우, 본인의 실직 및 4000만원에 이르는 빚과 지하 단칸방이라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극복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본인의 어려운 처지를 타인에게 표출하고자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같은 해에 벌어진 서초구 반포동의 초등학교 흥기난동사건의 경우도, 본인의 어려운 경제적 처지와 가정적 배경에 대한 원인을 사회에 돌리고 국회의원을 살해하려던 계획을 세웠다가 부유층 자녀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반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작성한 메모에 "열심히 노력해서 언젠가는 성공한다 해도 제겐 절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등 사회적으로 설정된 목표에 대한 포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범죄로 연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개별 사례들 외에도 사회적인 수단을 상실하여 표출적 범죄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뒷받침 하는 연구결과들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제시되었다. 윤정숙 외²⁶⁾의 연구에서 문지마 범죄 가해자 48명을 대상으

로 한 주거 조사에서는, 고정된 주거가 없는 비율이 20.8%(10명)에 달하였다. 또한, 직업이 없는 비율이 36명(75%), 있어도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인 비율이 11명(22.9%)이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이 없는 경우가 35명(72.9%),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6명(12.5%)이었다. 특히, 현실불만형 문지마 범죄자들의 월수입의 평균은 18.75만원으로, 연구대상 문지마 범죄자들의 월수입의 평균인 25.23만원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대검찰청²⁷⁾의 연구에서는 총 18건의 문지마 범죄 사례를 3개의 하위유형(정신장애, 반사회성, 외톨이)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반사회적 집단을 특징짓는 특성 중 하나로 가정환경의 결손을 꼽았다. 더불어 직업적 측면에서 학업을 마치지 못해 취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비전문적인 일을 단기간(6개월 이하)으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을 통해서 볼 때, 경제적인 환경이나 가정적인 환경이 불우할수록 표출적인 유형의 범죄로서 현실불만형 문지마 범죄를 저지른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위 피의자들의 특성이 특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인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해석 및 해법을 도출하는데 충분한 논거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우리사회가 허용하는 제도 안에서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존재들로 특정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로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논의가 뒤를 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사회학자 마셜(T.H. Marshall)의 시민권이론을 도입하여 논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다.

26) 윤정숙·박지선·안성훈·김민정, 앞의 책, 58-59쪽.

27) 대검찰청, 앞의 책, 39-41쪽.

IV. 시민권적 분석

현실불만 유형의 문지마 범죄를 시민권 이론을 통해 분석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틀이 되는 시민권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국 사회의 시민권 발달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후 시민권이론과 범죄 사이의 연관성을 탐색하기 위해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권과 사회적 정체성이 연결되는 지점, 그리고 사회적 정체성과 범죄사이의 강한 연관성을 탐구하여, 시민권이론을 통한 범죄의 해석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1. 한국 사회의 시민권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에서의 권리를 획득해온 역사적인 과정을 사회적으로 탐구한 마셜은 시민권(Citizenship)의 발달과정을 논증하였는데, 이는 그의 대표저작인 '시민권과 사회계급²⁸⁾'에 잘 나타나있다. 그는 18세기의 공민권, 19세기의 정치권, 그리고 20세기의 사회권의 발달의 역사와 과정을 설명하였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비롯하여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나아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개인적 자유권인 공민권, 그리고 투표권을 기반으로 정치적 권리를 투사할 수 있는 정치권, 그리고 복지제도와 연관되어 사회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영국의 복지제도를 포함한 각국의 복지국가의 담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한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

28) Marshall, Thomas H.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Vol. 11)*: Cambridge, 1950.

서의 사회적 시민권의 실제 발전 단계는, T.H. Marshall이 최초로 이야기한 시민권 발전의 역사와는 차이가 있다.

한국사회의 시민권은 <표 5>²⁹⁾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의 공민권-정치권-시민권의 순서가 아닌, 시민사회에서의 정치권과 국가 안에서의 사회권이 혼재하며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표 5>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프로그램	입법연도	적용자격	비고
사회보험	공무원연금	1962	공무원	
	교원연금	1973(1975)	교직원(사립)	
	국민연금	1973(1988)	노동자	1999년 도시 자영인 모두 포함
	퇴직금	1961	노동자	
	공·교의료보험	1977	공무원·교원	2000년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
	직장의료보험	1976	노동자(5인 이상)	
	지역의료보험	1988	도시·농촌 자영자	
	산업재해보상보험	1963	노동자(5인 이상)	
	고용보험	1995	노동자	
사회부조	생계보호	1961	절대빈곤자	생활보호법
	의료보호	1970	저소득자	
	보훈사업	1961	상이군경·국가유공	
	재해구호	1962	이재민	
사회 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1970	복지13법, 기본법	
	이동복지사업	1961	주로 요보호이동	
	노인복지사업	1981	주로 요보호노인	
	장애인복지사업	1981	심신장애자	
	모자복지	1990	모자가정·미혼모	
	부녀복지	1961	윤락녀	

29) '사회보장', 한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러한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은 압축적 근대성³⁰⁾으로 대표되는데, 서구에서 오랜 시간에 걸친 민주화와 산업화 등의 근대화과정을 통해서 정치권과 사회권을 확보해온 역사와는 다르게 전후 5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낸 압축적인 성장과정은 한국사회의 시민권을 설정하는데 많은 논쟁을 만들어 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논쟁은 한국 사회에서 지난 수십 년간 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사이의 대립구조의 형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해서 사회복지지는 잠시 미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사회 일부에 형성되어 복지담론이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격렬한 사회적 논쟁에 휩싸이며 매 정권마다 커다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특히나 사회적 시민권 확보 측면에서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시민사회의 보편적인 권리보다는, 시민권 발달 초기단계의 영국의 구빈법과 같은 특정 대상에 대한 제한적인 수혜적 복지가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커다란 힘을 얻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불완전성을 만들어냈는데 이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에는 앞의 묻지마 범죄자들의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주거와 직업, 그리고 가족이라는 요소가 있다.

먼저 한국사회의 주거적 요소를 살펴보면, 김용창³¹⁾은 각 지자체의 주거복지적 관점에서 시민들에게 보장된 사회권의 수준을 평가한 결과, 그 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그가 지적하였듯이 주택 정책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분양시장에만 초점을 둔 결과, 사회구성원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시민권의 구성요소 중 하

30) 장경섭, “압축적 근대성과 복합위협사회”, 비교사회학회, 비교사회 통권 제2호, 1998, 371-414쪽.

31) 김용창, “복지 대상으로서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서비스 평가”, 공간과 사회, 27호, 2007, 172-204쪽

나로서의 주거복지와는 매우 거리가 먼 실태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직업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위의 <표5>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권의 확보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인식되기보다는 직장(직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즉, 적절한 직업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선택적으로 사회권을 보장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Handler³²⁾가 지적한 근로연계 복지제도가 가져오는 직업적 집단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일부에 대한 필연적인 배제라는 결핍을 그대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장질서하에 개인의 노동조건이 가져오는 기본적인 시민권적인 차별에 대해서 Offe³³⁾는 경제적 시민권으로 불리는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제안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주택과 직업에서의 한국사회의 시민권적 결핍과 더불어, 그 문제점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가족'과 '복지' 사이의 관계이다. 장경섭³⁴⁾의 연구에 따르면, 복지국가 담론이 등장하기 시작한 이후 한국사회는 사회가 제공하였어야 하지만 미진했던 복지분야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대가족이 해체되고 핵가족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라는 논거를 제시하며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게 하였다. 이렇게 국가의 필요성이 증대되어가는 상황에서 가족에게 미루었던 사회권의 일환으로서 국가가 보장하였어야 할 복지제도의 미비는 국가를 대신해 기능할 수

32) Handler, Joel F. *Social citizenship and workfare in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The paradox of inclu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33) Offe, Claus. Towards a New Equilibrium of Citizens' Rights and Economic Resources? *Societal Cohesion and the Globalising Economy: What Does the Future Hold*, 1997. pp.81-108.

34) 장경섭, 가족, 생애, 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2009.

밖에 없었던,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가족을 통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집단을 복지제도의 공백으로 내몰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볼 때에 반사회적 성향의 문지마 범죄자들 중 다수가 향유하고 있지 못하였던 사회적 시민권으로서의 특징인 주거와 직업 및 소득 그리고 가정 환경적 내용은 한국사회의 시민권과 복지제도, 그리고 범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더욱 사실적으로 역설한다고 볼 수 있다.

2. 시민권과 범죄

1) 사회적 시민권 확보의 필요성

본 논문에서 한국사회의 표출적 범죄를 시민권 이론을 통해 살펴보며 시사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시민권과 범죄 사이의 연관성은 기존의 학자들에게도 관심 있는 주제 중 하나였다. Reiner³⁵⁾는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영국의 블레어 정부시기의 치안에 대하여 마셜의 시민권 이론을 적용하고자하였다. 그는 영국정부의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사회복지제도의 축소가 마셜의 시민권이론의 세 가지 유형의 시민권(공민권·정치권·사회권)의 축소를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증가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신자유주의 정부의 'Law and Order' 프로그램에서 주장하는 범죄율의 감소는 사실상 지엽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졌으며 오히려 범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실업, 사회적 배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위와 같은 정책적 방향은 과거 사회권이 신장되던 시기의 사회적 복지제도의 성장 및 낮은 범죄

35) Reiner, Robert. *The politics of the pol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울과는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프로그램을 계기로 경찰의 신뢰는 떨어졌음을 이야기하였고, 사회권을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접근만이 실질적인 범죄의 감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Reiner의 주장은 한국사회의 표출적 범죄에 대한 논의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충분한 사회권의 확보를 미루며 숨가쁘게 발전해온 한국사회의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개인과 그 가족이 떠안아야 할 국가 근대화의 짐이 어느 순간 역치를 넘게 되어 범죄를 통해서 표출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경제적 영역에 비해 더디게 성숙한 시민사회라는 과제와 시민들의 계속되는 요구에 대해 국가가 시혜적인 태도로 대응하며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는 일방향적인 양상을 함께 보여주었다. 이는 국가가 사회권 확보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억누른 채 그 희생을 토대로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국가주도적 성장 이후에도 그동안 희생에 대한 보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사회가 직시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기반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부담에 대한 역치의 초과는 개인과 사회의 복합적인 책임 하에 사회제도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 이혼 그리고 파산 등 개인적 차원의 실패, 즉 위에서 언급한 긴장상태의 원인을 오랜 시간 동안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하였던 사회로 돌리는 새로운 경향을 만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발전 단계 속에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주제로 논의될 수 있는 사회적 시민권의 미비와 특정 가능한 사회적 현상인 범죄 사이의 연결고리를 직접적인 방식으로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이러한 어려움에 도전하기 위해 최근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도구를 활용한 연구들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2) 실질적 시민권과 사회적 정체성, 그리고 범죄

먼저 정체성이란 본인이 스스로에 대해 정의하고 생각하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여러 학문 분야에서 '성적 정체성(Sexual Identity)', '민족 정체성(Ethnic Identity)',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사회와 개인 사이의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을 활용하여 시민권과 범죄 사이를 연결하고자 한다. 한 사회와 그 사회의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회적 정체성과 시민권 사이의 연결은,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Ashforth & Mael³⁶⁾의 개인과 사회집단 사이의 영향력과 관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정립된, 사회집단과 일체를 이루거나 집단에 소속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볼 때에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마셜이 이야기한 3단계의 시민권의 발전단계에 대한 논의를 지나서 시민권 자체의 분류에 대해 논의한 학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Brubaker³⁷⁾는 시민권을 국민국가의 구성원을 이야기하는 형식적인 시민권(Formal citizenship)과 마셜이 이야기한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실질적 시민권(Substantive Citizenship)으로 구분하였다. 즉,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 가지게 되는 형식적인 시민권과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층위로 가지게 되는 실질적 시민권 사이의 간극을 이야기하였다. 이는 Lister³⁸⁾가 파악한, 경제

36) Ashforth, Blake E, & Mael, Fred.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1), 1989. pp.20-39.

37) Brubaker, William Rogers. "Membership without citizenship: The economic and social rights of noncitizens". *Immigration and the politics of citizenship in Europe and North America*. 1989. pp.145-162.

38) Lister, Ruth. *The exclusive society: citizenship and the poor: Child Poverty*

적인 결핍을 가진 시민들이 시민사회에의 참여에 기반하여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통로인 정치권을 상실하고 주변화 되는 과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Lister의 연구는 형식적으로 동일한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상자들이 처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차이에 따라서 이들이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가지는 시민권은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층위의 시민권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들의 논의를 고려할 때에 이제는 한 국가의 시민에게 형식적으로 부여되는 시민권이라는 개념에서 한 사회에서 구성원이 그 시민으로서 어떠한 의무와 권리의 범주에 속해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시민권의 개념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일부 부합하는 사례를 제시하는 것만을 통한 공민권 → 정치권 → 사회권 순서의 단계적인 해석을 넘어서 한 사회에서의 의무와 권리의 총체로서의 '실질적인 시민권'이 형식적인 시민권을 지나, 실제로 시민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은 바로 위와 같은 실질적인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시민권 연구의 새로운 발전방향과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마셜의 뒤를 이어 시민권 이론을 주도한 Turner³⁹⁾는 마셜의 시민권 이론을 이야기하며 공민권과 정치권을 넘은 사회적 시민권은 바로 정치적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총체라고 설명하였으며, 결국 시민권 이론은 사회의 희소한 자원에의 접근 가능성을 포함하여 시민사회에서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다양요건들(성, 인종 등을 포함한)을 아우르는 주제로서 기능한다고 이야기하였다.⁴⁰⁾ 특히 Tilly⁴¹⁾는 유럽

Action Group. 1990. pp. 41-46.

39) Turner, Bryan S. "TH Marshall, social rights and English national identity: Thinking Citizenship Series". *Citizenship studies*, 13(1), 2009. pp. 65-73.

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며 마셜의 시민권이론을 포함해 시민권과 정체성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시민권이란 바로 국가와 그 국가에 속한 시민인 개인이 맺는 연결고리로 특징이 되고 그 이후에는 집합적 정체성으로 발전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들의 논의와 같이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포괄적이면서도 중요한 개념이 한 개인이 속한 인종, 계급, 국가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정의되고 형성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시민권을 고민함에 있어서 바로 시민권을 가진 주체가 느끼는 사회적인 정체성이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시민권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커다란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시민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회적 정체성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죄라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그 중요성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와 경찰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심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Tyler,⁴²⁾ Jackson 외⁴³⁾ 등이 주로 논의한 '경찰 정당성(police legitimacy)' 연구의 최근 주요 경향 중 하나는 다른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을 가진 대상이 경찰 정당성 연구의 주요 모델인 '절차적 정의 모델(Procedural Justice model)'에 적용되었을 때 어떻게 다른 연구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Bradford⁴⁴⁾는 경찰 정당성 모델의 주요 종속변수인 경찰

40) Turner, Bryan S. "Citizenship studies: a general theory". *Citizenship studies*, 1(1), 1997. pp.5-18.

41) Tilly, Charles. "Citizenship, identity and social history".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history*, 40(S3), 1995. pp.1-17.

42) Tyler, Tom R. *Why people obey the law*: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43) Jackson, Jonathan, Bradford, Ben, Hough, Mike, Myhill, Andy, Quinton, Paul, & Tyler, Tom R. "Why do people comply with the law? Legitimacy and the influence of legal institution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012

에의 협력(Cooperation with police)을 대상으로 한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서 국가 및 지역(영국)을 사회적 정체성의 분석 척도로 삼고 그 소속감의 정도에 따라 2개 그룹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정체성을 ‘비영국(Non-UK)’ 집단으로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경찰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주요 변수는 기존의 모델에서 강조된 경찰의 정당성(Police legitimacy)이 아닌 사회적인 정체성(Social Identity)이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정체성에는 경찰의 효과적인 범죄에 대한 대응보다 절차적으로 공정한 경찰활동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의 또 다른 연구⁴⁵⁾는 교통관련 법규를 위반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사회적 정체성이 잘 형성될수록 법규의 위반을 덜 한다는 결론을 경찰 정당성 모델을 통해서 도출하였다. 더불어 Murphy 외⁴⁶⁾의 연구에서 역시 사회적 정체성이 법규의 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adburn 외⁴⁷⁾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경찰 정당성 모델에서의 주요한 독립변수인 절차적 공정성의 해석에 가깝게 연관된 변수로, 사전에 개인에게 형성된 사회적 정체성에 따라 경찰의 행동이 다르게 비추어질 수 있음을

44) Bradford, Ben. "Policing and social identity: Procedural justice, inclusion and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public". *Policing and Society*, 24(1), 2014. pp. 22-43.

45) Bradford, Ben, Hohl, Katrin, Jackson, Jonathan, & MacQueen, Sarah. "Obeying the rules of the road: Procedural justice, social identity, and normative compliance".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31(2), 2015. pp. 171-191.

46) Murphy, Kristina, Bradford, Ben, & Jackson, Jonathan. "Motivating compliance behavior among offenders: Procedural justice or deterrenc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3(1), 2016. pp. 102-118.

47) Radburn, M., Robinson, M., Stott, C., & Bradford, B. "When is policing fair? Groups, identity and judgements of the procedural justice of coercive crowd policing". *Policing and Society*, 2016. pp. 1-18.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에 사회적 정체성은 실질적인 범죄행위의 감소와 함께 범죄에 대처하는 경찰력의 투사와 이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순차적인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결핍’ → ‘실질적 시민권의 차이’ → ‘사회적 정체성에의 영향’ → ‘범죄 가능성’의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정신장애 유형의 묻지마 범죄의 경우 교정적이고 의학적인 접근이 그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지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현실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범하는 범죄의 경우 그 예측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에 경찰적인 접근은 그 효용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현실불만 유형의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방식은 사회적 결핍과 사회적 정체성과 관련된, 필연적으로 보다 넓은 영역에서의 접근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다양한 층위의 시민권적 지위의 차별성이 발생하는 지점을 특정하고, 같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 사이에 사회적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며 이러한 정체성의 형성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그 논의를 바탕으로 범죄와의 연결고리를 찾아 대응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안은 경찰-검찰과 같은 형사사법기관이 아닌 복지부 등의 사회적인 접근이 가능한 기관이 추가 되어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수렴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1. 시민권과 사회적 정체성 그리고 범죄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진행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묻지마 범죄가

정신장애형과 현실불만형 등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현실불만형 범죄와 같이 개인적 긴장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는 표출적 범죄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현실불만형 표출적 범죄자들의 경우 대부분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가기 위한 사회적인 담론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시민권이론(Citizenship theory)을 통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마셜의 시민권이론을 통해서 촉발된 시민권 이론이 이제는 정형화된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의 분석이 아니라,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법적으로 지정된 시민권을 넘어 실제로 한 사회 안에서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물음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회적 정체성과 연결지었다. 이는 본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에 기반하여 설정되는 사회적 정체성이, 바로 시민권 이론이 고민하고 있는 실질적 시민권을 분석하는 매우 적절한 수단이라는 논의에 근거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 표출적 범죄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권 이론을 도입한 만큼, 사회적 정체성과 범죄 사이의 연관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단계가 되었다. 특히, 기존의 강제력이 아닌 경찰의 절차적 정당성에 근거하여 범죄대응논리를 발전시켜온 경찰 정당성이론의 최근 경향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바로 오랜 기간 확립되어온 절차적 정당성을 통한 범죄율의 감소와 경찰에 대한 협력이라는 공식이,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변수를 적용하는 순간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개인이 어떠한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경찰의 행동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찰과의 공동체치안의 가능성 및 정체성을 가진 개인 자체가 위법행위에 이를 가능성 모두 다르다는 것은, 범

죄를 논함에 있어서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변수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변수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본인이 속한 사회를 대상으로 개인적 긴장을 표출하는 범죄에 대한 접근은 범죄의 행위자들과 범죄의 대상이 된 사회가 맺는 관계에 대한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압축적인 근대화 과정을 겪은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사회권에 대한 결핍이 그가 속한 사회에서의 시민권으로서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는 바로 대상이 가지는 사회적 정체성의 형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정체성이 범죄의 발생, 그리고 범죄를 관리하는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이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만큼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유형의 범죄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회적인 접근은 범죄 자체에 대한 행동적 분석 외에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묻지마 범죄라고 통칭되는 범죄의 종류에 대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표출적 범죄의 한 유형으로서의 묻지마 범죄로 바라보며 접근을 하였다. 이를 위해 묻지마 범죄를 더 이상 원인이 없는 범죄가 아닌, 원인을 가진 유형화가 가능한 범죄로 분류한 선행연구들의 뒤를 이어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를 해석할 수 있는 도구로 시민권이론에 이어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서 그 범죄의 원인에 대해 접근해보았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적 정체성과 범죄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설문자료의 부재로 인해서 양적인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의 논의를 더

육 구체적으로 실증화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현실불만형 문
지마 범죄를 포함한 표출적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그 원인과 과정, 그리
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경찰활동적 관점에 대한 실증적인 후속연구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논문 접수 : 2017. 8. 5, 심사 개시 : 2017. 8. 23, 게재 확정 : 2017. 9. 22〉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대검찰청, 문지마 범죄자 심층면접을 통한실증적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대검찰청, 2013.

윤정숙·박지선·안성훈·김민정, 문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장경섭, 가족, 생애, 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2009.

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보고서, 문지마범죄의 개념화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3.

2. 논문

고선영, “이상동기범죄자의 성향 및 특성 프로파일링-불특정 대상·무차별 상해사건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1(4), 2012.

김상균, “무동기 흉악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21, 한국경찰학회, 2009.

김용창, “복지 대상으로서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서비스 평가, 공간과 사회”, 27, 2007.

김진혁, “한국형 증오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6, 2010.

박순진,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2004.

박지선·최낙범, “문지마 범죄의 특성과 유형”,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4(3), 2013.

- 박형민, “무차별 범죄 (Random Crime) 의 개념과 특징”, 한국공안행정학회
보, 22, 2013.
- 양문승·이훈재, “증오범죄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원광법학,
24, 2008.
- 유주영·박영숙, “‘묻지마 범죄’를 둘러싼 담론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44, 2016.
- 장경섭, “압축적 근대성과 복합위협사회”, 비교사회, 제2호, 1998.
- 천정환, “한국형 묻지마 범죄 담론에 대한 독창적 비판론”, 교정복지연구,
43, 2016.

II. 외국 문헌

1. 단행본

- Best, Joel, *Random violence: How we talk about new crimes and new victims*, Univ of California Press, 1999.
- Handler, Joel F, *Social citizenship and workfare in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The paradox of inclu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Lister, Ruth. *The exclusive society: citizenship and the poor*, Child Poverty Action Group, 1990.
- Marshall, Thomas H. *Citizenship and social class(Vol. 11)*, Cambridge, 1950.
- Reiner, Robert, *The politics of the pol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Tyler, Tom R, *Why people obey the law*,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2. 논문

- Ashforth, Blake E. & Mael, Fred.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1), 1989.
- Bradford, Ben. "Policing and social identity: Procedural justice, inclusion and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public". *Policing and Society*, 24(1), 2014.
- Bradford, Ben, Hohl, Katrin, Jackson, Jonathan, & MacQueen, Sarah. "Obeying the rules of the road: Procedural justice, social identity, and normative compliance".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31(2), 2015.
- Brubaker, William Rogers. "Membership without citizenship: The economic and social rights of noncitizens". *Immigration and the politics of citizenship in Europe and North America*, 1989.
- Jackson, Jonathan, Bradford, Ben, Hough, Mike, Myhill, Andy, Quinton, Paul, & Tyler, Tom R. "Why do people comply with the law? Legitimacy and the influence of legal institution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012.
- Merton, Robert K.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5), 1938.
- Murphy, Kristina, Bradford, Ben, & Jackson, Jonathan. "Motivating compliance behavior among offenders: Procedural justice or deterrenc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3(1), 2016.
- Offe, Claus. "Towards a New Equilibrium of Citizens' Rights and Economic Resources?" in *Societal Cohesion and the Globalising Economy: What Does the Future Hold*, OECD, 1997.

- Radburn, M., Robinson, M., Stott, C., & Bradford, B. "When is policing fair? Groups, identity and judgements of the procedural justice of coercive crowd policing". *Policing and Society*, 2016.
- Tilly, Charles. "Citizenship, identity and social history".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history*, 40(S3), 1995.
- Turner, Bryan S. "Citizenship studies: a general theory". *Citizenship studies*, 1(1), 1997
- Turner, Bryan S. "TH Marshall, social rights and English national identity: Thinking Citizenship Series". *Citizenship studies*, 13(1), 2009.

Ⅲ. 기 타

- '사회보장', 한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강석운·박종생, "'문지마' 사회심락을 캔다" 한겨레, 1996. 10. 30.
- 김종구, "침울한 청와대 '문지마 대선'", 한겨레, 1997. 09. 24.
- 서화동, "이준미부대 가세 '문지마 투자'", 경향신문, 1998. 12. 11.
- 손성태, "형사정책연구연, 증권범죄사례 인터넷에공개키로", 한국경제, 2000. 12. 13.

< ABSTRACT >

A Study on the social Complaint Type of Non-specific Motive Crime

Lee, Young-Sub · Park, Ji-Sun

This study addressed the needs of sociological approach to one of the expressive crime type so called “social complaint based Non-specific Motive Crime” beyond a criminal justice approach. To achieve a research goal, this study reviewed articles on the ‘Non-specific motive crime’ and identified Social compliant based non-specific motive crime as a subtype of it. Adding to that, by adopting Citizenship theory of T.H. Marshall, this study certified the possible effect of the sociological backgrounds of criminals to the substantial citizenship. In terms of linking between the citizenship theory and criminality, this study identified strong connection with criminality and ‘social identity’ that can be diversified by one’s own substantial citizenship. As a result, this study claimed the needs of sociological approach to the “social complaint based Non-specific Motive Crime” and further research on ‘Social Identity’ as a crucial variable in the criteria of criminal justice

◆ Key Words : Citizenship, Expressive Crime, Non-specific Motive Crime, Social Identity, Social Complaint

